

사진기록의 평가기준 연구*

A Study on the Appraisal Criteria of Photographic Records

배 은 경(Eun-Kyoung Bae)**

박 주 석(Ju-Seok Park)***

목 차

- | | |
|------------------|------------------|
| 1. 서 론 | 3. 사진기록의 평가기준 모델 |
| 2. 사진기록의 특성 | 3.1 평가영역 설계 |
| 2.1 사진기록의 개념 | 3.2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
| 2.2 사진기록의 가치 | 4. 결 론 |
| 2.3 사진기록 평가의 특수성 | |

<초 록>

19세기에 발명된 이래 대표적인 이미지 기록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사진은 사회의 전 분야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 생산 및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가업무가 우선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평가는 기록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지속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록학의 평가선별론의 이론적 구조와 사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먼저 사진기록의 개념, 가치 및 평가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기록의 평가에 이용되는 기존의 평가기준과 사진기록의 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된 평가기준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을 범주화하여 설계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요소를 제시했다.

주제어: 사진기록, 사진기록의 평가, 사진기록의 가치, 평가기준 분석, 평가모델

<ABSTRACT>

Photography has been used as a typical tool of recording image since its inven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Photographs provide valuable visual information about all parts of society, and a systematic management must be preceded to use these informatio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system of photographs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photographic medium. It is necessary for many archives to perform appraisal first to collect and manage enormous photographs. Appraisal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meaning and value of records, and the reasonable criteria should be needed to carry it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ppraisal criteria for photographic records based on the archival appraisal theo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hotography. This study draws on traditional appraisal theories and some literatures for archival management of photographs.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examines the concept and values of photographic records and the distinctiveness of appraising photographs. The second section analyzes the existing appraisal criteria for individual records. The third section designs appraisal classes of photographic records and proposes the criteria for each classes.

Keywords: photographic records, values of photographic records, appraisal criteria, a model of appraisal classes

* 본 연구는 배은경의 석사학위 논문(2009)인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를 요약·수정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b.eunyoung@gmail.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firstjason@mju.ac.kr) (교신저자)

■ 접수일자 2009년 11월 26일 ■ 수정일자 2009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6일

1. 서론

오늘날 아카이브즈의 현황과 변화 방향은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기록매체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은 기록을 하기 위해 외적인 수단, 즉 '도구'에 의존한다. 그로 인해 기록에 사용되는 도구와 재료를 만드는 기술은 필연적으로 기록의 내외부적인 특성을 좌우하게 된다. 제지 및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19세기부터 등장한 다양한 기록매체는 기록의 생산량과 종류에 있어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그 중에서도 사진이라는 기계적인 이미지 기록수단은 이후의 기록의 생산 양상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자,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한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다른 매체로 전환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O'Toole 1990, 32-39). 또 정보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개인, 단체, 기관에 의해 생산된 방대한 양의 사진은 업무, 예술, 과학 등 사회의 전 분야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은 인간의 삶에 대한 시각적 역사를 보여주는 자원이며, 그러한 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기관은 사진의 관리와 연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Ritzenthaler et al. 2006, 1-20).

사진을 시각적 자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진과 같은 이미지 형태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록학의 이론과 실무에는 시각적인 매체의 성질과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아카이브즈에서 사진은 물리적 특성이나 내용적인 측면을 위주로 관리되어 왔을 뿐, 사진이미지가 기록으로서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가지게 되는 맥락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키비스트는 이미지 기록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형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수집, 정리, 기술 및 보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Schwartz 2004, 107-110).

1990년대 후반부터 기록관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사진이미지를 아카이빙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했지만, 사진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표준의 부재와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도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 및 필름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위주로 수집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사진의 수집,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¹⁾

분산되어 있는 사진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진기록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기록을 선별하는 기반이 되는 아카이브즈의 핵심적인 업무이며, 지속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 자체를 규정하는 과정이다. 국내에 사진이 수용된 19

1) 국가기록원. 2007. 『2007 국가기록백서』, 국가기록원, 60-64.;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의 수집 범위 및 대상, 업무절차를 개괄적으로는 제시하고 있다. [cited 2008.12].
 <http://www.archives.go.kr/archives.do?uri=profEval_01&depth1_code=7&depth2_code=3&depth3_code=4>.

세기 말 이래 생산되고 축적되고 있는 사진의 양은 너무나 방대할 뿐만 아니라 관리 또한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아카이브즈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기록을 수집하고 관리의 우선순위를 일관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평가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카이브즈에서 사진기록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사진기록의 특성

2.1 사진기록의 개념

사진은 대상에서 반사된 빛이 카메라를 통해 들어가서 맺힌 상을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상을 고정시키기 위해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감광유제의 광화학적 변화를 이용하고, 디지털 방식에서는 반도체를 이용해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방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빛의 원리와 카메라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대상을 고정시킨 이미지는 모두 사진술의 원리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SAA 기록학 용어집』에서는 사진(photograph)²⁾을 ‘① 광학 시스템을 이용해 감광표면에 형성되어 광화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고정된 정지 그림(still picture) ② 카메라를 이용해

표현된 이미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용어집에서는 사진을 이미지(image)와 프린트(print)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화학적 과정을 거쳐 만든 이미지를 사진으로, 망판인쇄(halftone)나 우드버리타입(Woodburytype)과 같은 사진 제판법을 통해 기계적으로 복제한 이미지를 프린트로 보고 있다.³⁾ 여기에서 프린트는 ‘사진이미지, 특히 포지티브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를 의미한다(Pearce-Moses 2005, 294-295).

아카이브즈에서 사진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할 때 이러한 용어 구분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용어 구분에 따른다면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사진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네거티브를 인화하여 만든 낱장의 사진으로 만든 경우와 망판인쇄를 통해 대량으로 복제하여 잡지에 실은 프린트는 가치와 관리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사진이미지의 경우 최종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두 차례 이상의 노출과 화학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며, 디지털 사진이미지의 경우에도 네거티브-포지티브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캡처해서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일련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Langford et al. 2007, 3-7).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록(photographic records)이라는 용어는 형태나 매체에 상관없이 사진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사진이미지 중에서 아카이브즈의 대상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2) 사전적으로 포토그래프(photograph)는 명사인 ‘사진’과 동사인 ‘사진을 찍다’라는 두 종류의 품사로서 사용되며, 포토그래피(photography)는 명사로서 ‘사진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포토그래피를 국내에서 사진(寫眞)이라고 부르게 된 경위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에 설명되어 있다. 최인진, 1999, 『한국사진사』, 눈빛, 14-20.

3) R. Pearce-Moses,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94-295. 이는 의미상의 구분으로, 보통 프린트는 인화된 사진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막론하고 사진이미지는 최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형태가 되기까지 수차례의 복제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generation)의 사진기록이 생산된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본디지털 이미지(born digital image)와 아날로그 이미지를 스캐닝하거나 디지털 복사촬영을 통해 디지털화한 이미지(digitized image)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진기록은 제각기 다른 매체적인 특성과 정보를 지닌 기록으로서 아카이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기록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생산되고 활용되면서 거치게 되는 매체 변환과 그것에 관여한 기술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진술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아날로그 사진과 관련된 기술적인 프로세스는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이용된 형태인 포맷, 카메라를 통해 기계적으로 고정된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인화 방식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변화해 왔다(Ritzenthaler et al., 2006, 22-58). 사진을 형성하고 있는 포맷, 네거티브, 인화 프로세스의 관계는 시기에 따른 사진기술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디지털 사진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이용 포맷과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하는 기술, 출력에 이용된 재료 등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2 사진기록의 가치

평가 업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

은 기록가치(record value)이다. 기록가치는 기록에 특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주로 기록의 사용 목적에 의해 정의된다. 아키비스트는 특정 기록이 가지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 구분은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Ham 1993). 사진기록이 가지는 가치는 기록학에서의 가치구분에 따라 몇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진기록의 가치를 증거가치, 정보가치, 실물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1 증거가치

사진기록은 기관의 기구, 조직, 기능, 활동에 대한 시각적인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 증거가치를 지니는 사진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다(Ritzenthaler et al., 1984, 56). 정부, 기업, 대학, 비영리단체, 종교단체와 같은 대부분의 조직형 아카이브즈에서는 조직의 운영 또는 기능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즉 증거가치가 높은 사진을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 주제형 아카이브즈에서는 기능보다 특정 연대나 지역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보 원으로부터 사진을 수집하며, 이러한 사진은 상대적으로 증거가치가 낮고 정보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사진 컬렉션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거가치를 가지게 된다(Ritzenthaler et al., 2006, 96-98).

Schwartz는 사진이미지가 가지는 선천적인 다의성에 주목하면서,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미지는 특성상 동일한 이미지라 할지라도 이용 목적에 의해 다양한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의 사진이미지가 복제되어 여러 개의 분리된 사진기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Schwartz는 다른 기관이나 기록군 내에서 동일한 사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된 기록이므로 단순한 사본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Schwartz 1995. 51-52). 즉 사진기록의 증거가치는 사진이미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고자 했던 배경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진기록이라도 그것이 지닌 증거가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Vogt-O'Connor는 사진기록의 증거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사항을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Ritzenthaler et al. 2006, 98-100).

- 이미지의 생산자
- 이미지의 예상 이용자와 이용방법
- 사진가의 의도
- 이미지 생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지불 이유
- 이미지를 선택하고 수정한 사람(암실직원, 디자이너, 사진에디터 등)
- 이미지를 맥락화한 인물과 그 이유, 시기, 방법(다큐멘터리 프로젝트 후원자, 캡션 작성자, 큐레이터, 디자이너, 출판업자, 웹마스터 등)
- 사진에 관련된 도큐멘테이션의 검증과 진본성에 대한 맥락

즉 사진기록이 어떠한 활동에 대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생산되고 이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기록은 문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동일한 이미지가 생산 및 이용맥락에 따라 새로운 기록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사진기록의 증거가치는 생산에 관여한 인물들의 의도 및 기능적인 맥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물과 배경에 대한 정보는 사진기록과 관련된 도큐멘테이션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2.2.2 정보가치

사진기록은 활동, 시대, 사건, 장소, 진행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한다. 사진이미지에는 사진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시각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관되지 않은 목적으로 생산된 문서나 이미지 자료 내에 섞여있을 수도 있다(Ritzenthaler et al. 2006, 102). 수집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혹은 이미 소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사진기록은 이미지 내에 원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부가적으로 포함된 유용한 정보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기록은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해 문자기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시각적인 정보를 상당히 정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사진기록에 포함된 증거와 정보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같은 장면이나 사건을 촬영한 다른 사진이나 그러한 증거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기록에 의해 신뢰성과 진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에 사진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이미지 자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설명해줄 수 있는 도큐멘테이션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

다(Ritzenthaler et al. 1984, 56-60).

흔히 사진기록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진기록은 회화와 같은 사람의 손을 통한 이미지 기록 방식에 비해 훨씬 사실적인 기록수단이며, 문자기록이 보여주지 못하는 생생한 시각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록매체로서 주목받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기록은 촬영 당시의 인물, 사물, 사건을 보여주는 역사자료이자 과학적인 근거로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진기록은 그 자체로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기록이 될 수 없다. 사진은 육안으로 본 대상을 다른 기록수단에 비해 매우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사진이미지에 담긴 내용은 사람의 눈을 통해 보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다는 것은 뇌의 인식에 의한 의식적 행위의 결과이지만, 사진은 사용한 카메라 렌즈의 화각 내에 들어온 모든 대상을 광학적 원리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기록한다(박주석 외 1995, 277). 즉 사진기록의 내용은 그것을 촬영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사진기록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캡션을 부여하고 맥락화한 배경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사진은 문자와 같이 기록을 하는 일종의 도구인 것이지, 이미지 자체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사진이미지는 독립적으로 정보가치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기능적인 맥락에 크게 좌우받기 때문에,

사진기록의 정보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키비스트는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 즉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2.3 실물가치

사진기록의 실물가치는 특히 사진기록의 물리적인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진기록은 최종적인 이용을 위해 여러 세대의 복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동시에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장 생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사진술의 복제성은 사진기록의 원본성에 영향을 미치며 실물가치를 좌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UNESCO 시청각 용어집』에서는 실물가치가 정보내용의 유일성이나 가치, 연대, 물리적 형태, 예술적인 질, 희귀성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실물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보존이나 물리적 처리와 관련된 결정에 밀접하여 연관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Gibson G. et al. 2001, 128). 실물가치의 개념은 아키비스트가 사진 컬렉션의 낱장의 이미지나 이미지 시리즈에 대한 보존 처리를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입증되어 왔다. 또한 실물가치는 사진기록의 특별한 보안이나 접근의 필요를 인지하기 위한 요소로도 사용된다(Ritzenthaler et al. 2006, 99).

Vogt-O'Connor는 사진기록의 실물가치로서 예술가치(artifactual value)와 연합가치(associational value)를 제시했다.⁴⁾ 예술가치는 기록의 지적인 내용보다는 물리적 또는 예술적

4) Vogt-O'Connor는 예술가치와 연합가치를 실물가치의 요소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SAA 기록학 용어집』에서는 예술가치와 연합가치를 실물가치의 주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Vogt-O'Connor가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가치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 성질을 기반으로 한 효용성이나 중요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Pearce-Moses 2005, 36). 예술 가치는 시각적 질이나 주제의 희귀성과 같이 사진을 위한 가치의 카테고리이자 높은 미래의 이용률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서, 높은 예술적 질을 가진 이미지는 전시, 출판, 웹사이트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오리지널 하우징, 매트, 케이스에 들어 있는 질이 높은 사진이미지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높은 실물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증거가치와 정보가치가 낮더라도 빈번하게 사용될 여지를 갖는다(Ritzenthaler et al. 2006, 104-105).

실물가치의 또 다른 요소인 연합가치는 개인, 가문, 조직, 장르, 사건과의 관련을 기반으로 하여 자료가 가지는 유용성이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합가치는 소유권, 생산, 또는 자료의 주제를 기반으로 하여 부여될 수도 있다(Pearce-Moses 2005, 39).

2.3 사진기록 평가의 특수성

평가(appraisal)는 '① 이관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 ② 법적 요구사항과 현재, 그리고 잠재적 유용성에 기초하여 기록이 보유되어야 하는 기간을 결정하는 절차'로 정의된다. 즉 평가는 특정 기록이 아카이브즈에서 보존할 만한 지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는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금전적 평가와는 구분되며, 또한 처분일정표에 기초하여 가치를 사전평가(evaluation)하는 것보다 구분된다(Pearce-Moses 2005, 22-23).

기록학의 맥락에서 평가는 선별과 구분해서 사용된다. 선별(selection)은 '아키비스트가 기관의 법적 규정이나 수집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확인(identify), 평가(appraise) 및 이관(accession)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평가는 '실체적·잠재적 수집물이 아카이브즈 보존소에서 소요되는 보존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장기적인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Ham 1993, 2). 즉 평가는 기록이 해당 기관의 수집정책과 부합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아키비스트는 선별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Ham 1993, 37).

실무에 있어서 평가는 선별이나 수집 업무를 수반하지만, 평가의 실질적인 목적은 수집이기보다는 평가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평가의 본질은 기록이 지닌 의미나 가치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며, 선별과 수집의 본질은 평가의 결과를 실현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것이다(이승억 2006, 39 ; Cox 200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사진 기록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진기록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러한 가치를 실제로 관리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록의 생산량이 많지 않았고 기록의 종류 또한 손으로 쓰인 문자기록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사진, 동영상, 음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록매체가 발명되면서 기록의 생산량과 종류는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Ham 1993, 4-5). 이와 같은 다양한 매체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은 물리적 및 지적 성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해당 기록의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진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제반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기록학의 흐름에서 사진기록이 갖는 가치는 정보가치나 예술적인 가치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Schellenberg(1965, 325-326)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기록의 경우 정부 기관, 단체, 개인에게 있어 출처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데, 이는 이미지 기록의 의미 중 많은 부분이 그것들의 조직적인 기원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지 기록이 활동과 관련된 경우 대개 행위의 목적을 위해 생산되지 않으므로, 이미지 기록의 기능적인 기원에 대한 정보 역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Schellenberg는 이미지 기록은 보통 정보를 기록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되므로, 사진가나 아티스트는 미적인 만족감을 위해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미지 기록은 대개 출처나 기능적인 기원이 아니라 주제의 관점에서 중요하며, 인물, 사물, 현상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미지 기록이 조직이나 기능적인 출처보다는 주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Schellenberg

의 견해는 이후 사진기록을 평가하는 아키비스트에게 이어졌다. Leary(1985, 19)는 Kula(1983, 26)가 동영상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의견⁵⁾에 동의하면서 사진은 다른 시청각 자료와 마찬가지로 매우 적은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종종 사진은 조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자기록이 핵심적인 증거가치의 더 나은 정보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거가치보다는 정보가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Schwartz(1995, 50-54)는 이러한 관점이 사진기록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인이나 조직에서는 기계적으로 고정된 사진이미지를 진실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적인 묘사가 필연적으로 기록의 신뢰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Schwartz는 사진이미지의 기록성은 그것이 사용된 기능적 맥락을 파악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이 지닌 증거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아키비스트는 사진이 현실의 정확한 재현이라는 신뢰를 버려야하며, 이미지의 내용만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가 가지는 지속적 가치는 사진과 그것을 만든 구조와 기능, 기술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Schwartz의 견해를 기반으로, Boles(2005, 132-135)는 시각기록은 문자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차이

5) "...이미지 그 자체로는 증거가치가 매우 작거나 없다. 관련된 도큐멘테이션 - 제작 파일, 재무 또는 인사기록, 계약서나 통신문 - 은 영상 제작회사나 행정기관이 기능했는지를 밝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영상)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정보적이다(Kula, 1983)."

를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매체와 기록장치는 선별에 영향을 미치지, 그러한 영향은 아카이브의 평가 실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별은 아카이브즈 내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기준에 정보를 조화시키는 것이며, 매체와 기록도구의 특성은 아카이브즈의 재정상에 있어서 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사안으로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Ham(1993, 60-64)은 문자기록이 아니라 사진기록과 같은 특수 유형의 기록(special classes of records)을 평가할 때는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기술적인 문제와 정보 형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기록과 같이 매체적인 특성이 중요한 기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록의 평가분석 도구 외에도 기술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Ham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 안정성, 정보 이전의 가능성, 기록 세대, 기술 의존성, 정보 인식 및 검색 방법, 도큐멘테이션 정보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부가정보의 가치, 정보 형태, 이형 사본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⁶⁾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진이미지의 내용이나 예술성뿐만 아니라 사진기록의 기능적인 배경, 정보전달의 방식, 물리적 형태와 같은 사진매체의 특성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진기록의 기능, 내용, 형태에 있

어서의 특성은 사진기록의 증거가치, 정보가치, 실물가치의 개념과도 각각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 거시평가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다소 진행된 바 있다. Bailey(1997, 122)는 거시평가가 정부 외의 기록 생산자나 전통적인 기록 시스템의 통제 밖에서 보존되어온 사진기록을 비롯한 비문자기록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Schwartz(2002, 159)는 사진기록 또한 기능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역설하면서 거시평가의 전략을 보다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Wilson(2000)은 Schwartz와 거시평가가 사진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고, Schwartz는 두 가지의 주요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는 이론적인 측면으로 정부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으로서 사진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실무적인 측면으로 사진기록의 관리 실정상 거시평가의 방법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Wilson은 정부기록이나 비정부기록이나 모든 사진기록은 증거가치와 정보가치를 가지며, 평가기준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대다수의 사진기록은 기능적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맥락이나 관련 도큐멘테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많은 아카이브즈의 실무에 있어 사진기록은 타 기록들과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능을 기반으로 사진기록을

6) 원문에서는 특수 기록물의 종류로 ① 전자기록 또는 기계가독형 기록 ② 정지 사진(still photographs) ③ 동영상 ④ 음성기록 ⑤ 그래픽 기록 ⑥ 시청각기록을 예시로 들면서, 이러한 형태의 기록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진기록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정리했다.

평가할만한 여건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관점을 위한 여지도 포함하되 미시적인 관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의 실정에서는 개별적인 기록의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활용의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진기록이 평가에 있어 가지는 특수성은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기준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록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므로,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기록의 평가기준 외에도 사진기록을 평가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기준 또한 포함해야 한다.

3. 사진기록의 평가기준 모델

이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평가기준을 범주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록 및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영역을 설계했다. 다음으로 각 평가영역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설문을 제시한다.

3.1 평가영역 설계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은 기록 및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설계하였다.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은 기능영역, 내용영역, 예술영역, 이용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기능영역은 사진기록의 기능적 배경을 분석하는 영역으로 사진기록의 진본성을 비롯하여 생산 및 관리맥락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사실 기능에 의한 평가는 매뉴스크립트와 같은 기록에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처럼(Boles 1991, 30-33), 대부분의 경우 체계적인 구조와 프로세스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사진기록은 메타 정보가 부족하여 기능에 의한 평가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사진기록에 있어 진본성과 기능적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면 이는 사진기록의 해석과 이용에 있어 큰 제한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진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된 배경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것은 사진기록의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증거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평가에 있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내용영역은 사진기록이 포함하고 있는 이미

〈표 1〉 사진기록의 평가영역

영역구분	영역설명
기능영역	사진기록의 생산배경 및 기능적 맥락을 평가하는 영역
내용영역	사진기록의 내용의 중요성 및 질을 평가하는 영역
예술영역	사진기록의 실물가치 및 예술성을 평가하는 영역
이용영역	사진기록의 이용성과 이용 제한사항을 평가하는 영역
비용영역	사진기록의 보유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영역

지 정보의 중요성 및 완전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기록의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아키비스트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목적이나 수집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Boles 1991, 33-37). 사진기록의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요구되며, 원래 목적과는 별개로 기록되어 있는 사진이미지의 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사진기록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사진기록의 정보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술영역은 사진기록의 물리적인 희귀성이나 예술성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사진기록의 실물가치를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기록은 이미지가 포함하고 있는 증거나 정보와는 상관없이 물리적인 원형 자체나 기술적 또는 예술적인 질에 의해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특히 사진기록의 물리적 특성과 지적 특성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사진기록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이용영역은 사진기록의 이용성 및 접근성의 측면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기록은 궁극적으로는 이용을 위해 보존하고, 그렇게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관의 내부 및 외부의 이용자의 요구와 부합하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Boles 1991, 42-45). 또한 사진기록은 출판이나 전시와 같은 재생산의 가능성이 높은 기록이므로 저작권과 같은 지적인 접근 제한사항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영역은 사진기록을 평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사진기록은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많으며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는 곧 비용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는 수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외에도 가공, 보존, 보관에 있어 장비나 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2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평가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각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 및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고려했다.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인 기능영역, 내용영역, 예술영역, 이용영역, 비용영역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2.1 기능영역

기능영역은 사진기록의 생산배경이나 기능적 맥락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사진기록의 진본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기능영역의 평가기준으로는 식별성, 출처 및 관리이력, 원질서, 완전성, 기관관계성, 생산관계자라는 여섯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2 참조).

식별성은 사진기록에 수반되어 있는 도큐멘테이션을 통해 사진기록의 원본성, 진본성이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사진기록은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표 2〉 기능영역의 평가요소

평가영역	평가요소
기능영역	식별성
	출처·관리이력
	원질서
	완전성
	기관관계성
	생산관계자

데 있어 매우 한계가 있다. 사진기록은 관련된 도큐멘테이션이 의해 무엇을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생산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Charbonneau 2005, 126-127). 출처 및 관리이력은 사진기록의 보관 및 소유권에 대한 이력의 연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출처나 관리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사진기록은 신뢰성이 낮다.

원질서는 사진기록이 생산자나 또는 도큐멘테이션에 관련된 인물이 구성한 원래의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사진기록은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도큐멘테이션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는 그 자체로 사진기록의 기능적인 맥락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원질서가 유지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사진기록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며, 물리적인 정리 상태와도 관련되어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완전성은 사진기록 컬렉션이 얼마나 완전한 상태로 수집될 수 있는지, 또는 되었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사진기록의 컬렉션이 여러 곳에 분리되어 보관되면 이용

성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Ritzenthaler 2006, 101).

기관관계성은 사진기록이 해당 기관의 구조나 기능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증거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이다. 해당 기관에 의해 생산되고 유지된 맥락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진기록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성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⁷⁾

생산관계자는 사진기록의 생산하는데 관계된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의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사진기록의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은 크게 사진가, 사진에 찍힌 인물, 후원자, 기술자, 도큐멘테이션 수행자가 있다. 사진가는 예술가나 기술자와 같이 자기표현의 도구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이를 조금 확장시키면 사진기록을 직접적으로 생산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사진에 찍힌 인물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생산 자체에 관여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후원자 또는 고객은 개인 또는 전문적인 활동의 증거를 찾는 사람으로 이를 확장하자면 사진기록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기술자는 사진가의 어시스턴트로 암실 직원과 같이 사진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리터치를 가한 인물이다. 사진을 도큐멘테이션 한 인물은 사진에 질서를 부여하거나 제목을 붙인 인물이다. 사진기록은 실제 이미지를 생산한 인물과 이미지를 조합하거나 캡션을 기재한 인물의 의도가 다를 수도 있으며,

7) 이는 Boles의 정보가치모듈의 기능적 범주에서 조직내 위치, 기록의 본래 목적, 단위활동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조합과 캡션은 사진기록의 증거 및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생산관계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 (Charbonneau 2005, 125-126).

평가에 있어서 사진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사진기록의 기능적인 맥락을 판단하기 위해 서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사진가는 사진 컬렉션의 가치를 증가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자는 사진가를 알 수 없거나 별로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컬렉션의 가치를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Leary 1985, 60-61).

이와 같이 기능영역에 속하는 평가기준들은 생산에 관한 도큐멘테이션이 완전한 경우가 드물고, 매체의 특성에 의해 분리되어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 사진기록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기관 내에서 생산된 사진기록과 같이 업무과정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도큐멘테이션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능에 의해서도 사진기록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사진기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능에 의한 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을 기능을 통해 평가할 때는 사진기록은 생산과 이용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메타데이터가 유지되어야 한다.

3.2.2 내용영역

내용영역은 사진기록의 이미지 내용의 중요성 및 정보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영역이다. 내용영역에 포함하는 평가기준으로는 주제, 부가정보, 기간, 완성도의 네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내용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아키비스

트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목적이나 수집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Boles 1991, 33-37)(표 3 참조).

〈표 3〉 내용영역의 평가요소

평가영역	평가요소
내용영역	주제
	부가정보
	기간
	완성도

주제는 사진기록의 주제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사진기록의 경우에는 다중적인 주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사진기록은 명확한 주제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진이미지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평가대상이 되는 사진기록의 주제는 캡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사진기록의 주제가 분명하더라도 주제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

결국 주제의 중요성은 특정 아카이브즈의 수집정책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사진기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Leary 1985, 43-46). 사진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요소를 정해야 하며, 먼저 수집하기로 결정한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아카이브즈는 더 나아가 이러한 주제를 중요한 정보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기록의 선별 맥락에서 상세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기관의 핵심 임무와 계속 연계하면서 수집 영역

을 더욱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Charbonneau 2005, 123-125).

부가정보는 생산된 목적과는 관계없이 사진 기록에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사진기록과 같은 시청각기록물은 주로 종이로 된 문자기록물을 평가하는 훈련을 받은 아키비스트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적 특성이 있다(Ham 1993, 63-64). 사진기록에는 예상이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제와 동시에 이러한 부가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하 원칙을 활용하여 이미지에 나타난 인물과 그룹, 이미지에 나타난 활동, 이미지의 배경, 이미지의 목적, 이미지에 반영된 날짜, 사진적 캡처 방법 및 생산 방법과 같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Ritzenthaler 2006, 103-104).

- 누가: 이미지에 나타난 개별적인 인물 및 단체, 문화, 가족, 조직 등
- 무엇을: 이미지에 나타난 활동, 동물, 사진, 사물, 생물, 경과, 건물 등
- 어디서: 이미지에 나타난 건축물, 동굴, 도시, 풍경, 자연 경관 등
- 왜: 사진 장르(다큐멘터리 사진, 패션사진, 파인아트 사진, 증명사진, 포토저널리즘, 포트레이트 이미지, 과학사진 등)
- 언제: 이미지에 반영된 날짜, 연대, 무브먼트, 스타일
- 어떻게: 사진적 캡처 방법에 의한 장르(항공사진, 현미경사진, 위성사진 등) 및

기타 생산 방법

기간은 기록이 포괄하고 있는 기간의 범주를 관련 주제가 속한 연대기적 기간과 비교하여 기록의 내용적인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Boles 1991, 35-36). 즉 사진기록 아이템이나 그룹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이 관련 주제의 기간에 있어 어느 정도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포괄하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사진기록의 가치를 높아질 수 있다.

완성도는 기록이 주제를 얼마나 완전하게 도큐멘테이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Boles 1991, 36). 즉 사진이 이미지가 의도한 주제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미지 형태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사진기록은 특정한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한 번에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의도한 주제를 가장 잘 도큐멘테이션하고 있는 사진이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내용영역에 속하는 평가기준은 사진기록의 정보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이미지의 정보는 기능영역의 평가기준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3.2.3 예술영역

예술영역은 사진기록의 원형에 대한 가치나 미적인 질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사진기록의 실물가치를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영역의 평가기준으로는 세대, 시각문법, 예술

성, 형태, 연대, 상태, 연계성과 같은 일곱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4 참조).

〈표 4〉 예술영역의 평가요소

평가영역	평가요소
예술영역	세대
	시각문법
	예술성
	형태
	연대
	상태
	연계성

세대는 사진기록의 세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사진기록의 원본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진기록과 같은 매체는 세대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Ham 1993, 61-62). 사진기록은 한 번에 여러 장의 사본을 만들 수 있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복제를 거칠 수 있고, 이러한 복제 과정 중에서 사진이미지가 담고 있는 정보는 관계된 요인에 의해 변형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의 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원본성 또는 유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즈에서는 앞선 세대의 사진기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네거티브는 빛의 원리와 카메라에 의해 기계적으로 고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며 그러한 정보는 복제를 거듭함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원형에 가까운 정보를 위해서는 앞 세대의 사진기록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기관의 수집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인화된 사진이나 인쇄를 통해 대량 복제된 사진기록 또한

사진이미지의 생산 맥락과 본래의 용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앞 세대의 기록을 우선시하되 반드시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itzenthaler 2006, 97, 107).

시각문법은 사진기록의 이미지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시각적 요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사진이미지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형태의 정보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시각 어휘로 구성된 이미지는 연구나 전시 등과 같은 활용의 여지가 높다.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시각문법을 읽는 것은 이미지의 내용적인 측면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진기록의 시각문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색의 균형: 이미지의 전체적인 색, 또는 색의 정확도
- 구성: 이미지 내 주제요소의 정렬 방식
- 콘트라스트: 이미지의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사이의 상대적 차이
- 피사계심도: 사진의 주제가 선명하게 찍힐 수 있는 거리의 범위
- 노출: 빛의 농도와 지속시간, 사진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된 광원
- 초점: 광학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의 선명도
- 관점: 카메라가 주제와 관계하는 위치
- 리듬: 시각 요소의 반복적인 사용
- 시퀀스: 이미지의 연속적인 정렬 방식
- 공간: 배경 영역의 이용
- 톤: 이미지의 가장 밝은 영역과 가장 어두운 영역 사이의 쉐도우 수치(Ritzenthaler,

2006, 64).

이러한 시각요소를 평가할 때는 사진가가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나 예술적인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Charbonneau 2005, 122-123).

예술성은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사진기록과 같은 이미지 형태의 기록은 문자기록과는 비해 예술성이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술성이 높은 사진은 향후 전시나 출판과 같은 이용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사진기록은 비용의 문제와 직결된다. 예술사진과 역사사진의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사진은 관객과 기능이 다르므로 기록 기관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Cook, 1981), 기관은 정책과 제반 사항에 따라 예술성이 높은 사진기록을 보유할 수도 있다. 예술성은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평가기준이기도 하므로,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다.

- 사진가가 매체를 사용한 작업방법
- 사진가나 스튜디오 작업의 풀 바디 내에서 이미지의 위치
- 예술사, 커뮤니케이션사, 사진사, 기술사에서 사진가 작업의 위치
- 보존소, 컬렉션, 시리즈 내에서 발견되는 기능의 전체 범위와 다큐멘터리 자료 문

화 내에서 사진의 위치

- 국가, 지역 내에서 발견된 소장물의 범위 내에서 사진가 작업의 위치(Ritzenthaler 2006, 105).

형태는 사진기록의 재료나 프로세스 등 형태에 의한 희귀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사진기록은 매체의 성질에 따라 물리적인 보존이나 정보의 유지에 있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용된 재료나 방법을 비롯하여 크기, 부피 등 사진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물리적 및 화학적인 요소를 평가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진기록의 형태는 연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특정 연대에 따라 형태의 희귀성 또한 변화한다. 사진기록의 형태에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하는 종류로는 나이트레이트 및 디아세테이트 네거티브(Nitrate and Diacetate Negatives), 컬러 필름, 35mm 필름이 있다.⁸⁾

연대는 사진기록의 연대에 의한 희귀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대는 사진기록을 평가할 때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사진기록의 연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평가요소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 1839년도-1889년도: 모든 사진기록을 보존
- 1890년도-1940년도: 일반적인 선별요소를 적용
- 1940년도-현재: 엄격한 선별요소를 적용

이러한 시기의 구분은 사진매체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1888년에는 조지 이스트만의 코닥 박스 카메라가 도입되었으며, 1932년에는 라이

8) 이러한 종류의 사진기록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보존상 어려움이 많다(Leary 1985, 52-54)

카Ⅱ가 도입되어 35밀리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었다. 즉 이러한 두 연도를 기준으로 사진의 대중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나타나는 사진기록의 양에도 크게 차이가 있다. 사진기록의 양이 많은 시대일수록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⁹⁾

이러한 연대순의 분류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연대에 의해 평가를 할 때는 사진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같은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진기록이라도 지역에 따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이미지 정보의 희귀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연대에 의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키비스트는 역사, 기록과 생산출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Charbonneau 2005, 127-128).

상태는 사진기록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보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형태가 사진기록을 구성하고 있는 매체 자체의 특성에 대한 사항이라면, 상태는 그러한 매체가 얼마나 손상 또는 잘 보존되었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손상된 사진기록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질이 떨어지며 보존처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계성은 사진기록이 중요한 개인, 장소, 사건 등과 관련성이 있어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사진기록의 연합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이다.

3.2.4 이용영역

이용영역은 사진기록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요구사항이나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영역이다. 이용영역은 이용성과 이용제한으로 하위 영역을 구분한다. 이용성에 속하는 평가기준으로는 기관내 이용도와 기관외 이용도로 제안하고자 하며, 이용제한에 속하는 평가기준으로는 물리적 제한사항과 지적 제한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5 참조).¹⁰⁾

〈표 5〉 이용영역의 평가요소

평가영역		평가요소
이용영역	이용성	기관내 이용도
		기관외 이용도
	이용제한	물리적 제한사항
		지적 제한사항

이용성 영역은 기관내 이용도와 기관외 이용도의 두 가지 평가요소로 구분된다. 기관내 이용성은 법적 가치나 행정적 가치와 같이 Schellenberg의 1차가치에 해당되는 이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사진기록은 기관 내에서 법적 의무나 권리를 보호하거나 기록 생산자의 일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관 내의 법적 또는 행정적인 이용도는 기록을 보존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

기관외 이용성은 해당 사진기록에 대한 기관 외부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이용자의 이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9) 하지만 이러한 연대적 구분은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사진의 연대를 평가할 때는 한국의 사진사를 고려하여 연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Leary 1985, 41-42).
 10) 이용영역은 Boles(2005)의 정보가치 모듈 중 이용 범주를 기본으로 하되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했다.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의 정책과 부합하는 정도와 현재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이용도를 예측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이용자와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정통해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관의 원래 정책이나 임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Charbonneau 2005, 123).

이용제한 영역은 물리적 제한사항과 지적 제한사항의 두 가지 평가요소로 구분된다. 물리적 제한사항은 사진기록을 이용할 때 물리적인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보통 물리적 제한사항은 사진기록의 정리 상태와 연관된다.

지적 제한사항은 사진기록을 이용할 때 지적인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대표적인 지적인 제한사항으로는 저작권이 있으며, 이는 사진기록의 재생산이나 출판과 관련된다.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이용 제한사항의 영향은 우세한 기록의 가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사진기록의 증거가치가 우세하다면 접근제한은 영향은 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고, 정보가치가 우세하다면 접근제한은 중요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Charbonneau 2005, 128-129).

3.2.5 비용영역

비용영역은 사진기록을 평가, 수집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효율성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비용영역의 평가기

준으로는 평가수집비용, 보존처리비용, 보관비용, 참조비용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6 참조).¹¹⁾

〈표 6〉 비용영역의 평가요소

평가영역	평가요소
비용영역	평가수집비용
	보존처리비용
	보관비용
	참조비용

평가수집비용은 사진기록을 평가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평가수집비용에는 평가비용, 구매비용, 이전(transfer)비용이 포함된다. 평가비용은 사진기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다. 구매비용은 기록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전비용은 기록을 수집 또는 이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경비, 노동력에 관한 비용이다.

보존처리비용은 사진기록을 보존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보존처리비용에는 전문기술 수준, 물품비, 작업량이 포함된다. 전문기술 수준은 보존처리 작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의 수준을 의미한다. 물품비는 보존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비용이다. 작업량은 다양한 컬렉션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기록 그룹의 사이즈, 원질서, 지적 접근의 수준, 기록의 형태와 관련된다.

보관비용은 사진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

11) 비용영역은 Boles(1985)의 보유비용 모듈을 기본으로 하되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했다.

되는 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보관비용은 보관공간과 보관방법으로 구성된다. 보관공간은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적인 여유를 의미한다. 보관방법은 기록의 특성에 따른 보관방식 상의 차이를 고려한 보관설비의 필요성과 관계된다. 사진기록의 경우에는 사진매체의 특성에 맞는 보관 장비와 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비용은 기록을 참조하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물리적인 참조비용과 지적 참조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물리적 참조는 기록을 물리적으로 참조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량이며 지적 참조는 기록 내의 정보에 지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량과 전문기술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안된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사진기록의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요소	요소설명
기능영역		식별성	관련 도큐멘테이션에 의한 확인
		출처·관리이력	출처 및 관리이력의 연속성
		원질서	원질서 유지정도
		완전성	컬렉션의 분리정도
		기관관계성	기관의 구조 및 기능과의 적합성
		생산관계자	사진가/이용자/후원자/기술자/도큐멘테이션 수행자 등 생산관계자와 그 의도
내용영역		주제	주제의 중요성
		부가정보	부가적인 포함정보의 중요성
		기간	기록이 포괄하는 기간의 범위
		완성도	주제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정도
실물영역		세대	세대의 가치
		시각문법	색/노출/조점/톤 등 시각적 요소의 질
		예술성	미적 가치
		형태	재료/프로세스/크기 등의 매체 형태
		연대	연대에 따른 희귀성
		상태	물리·화학적인 상태
		연계성	중요한 개인, 장소, 사건과의 연관성
이용영역	이용성	기관내 이용성	법적·행정적인 이용정도
		기관의 이용성	현재·잠재적 외부이용자의 이용정도
	이용제한	물리적 제한사항	물리적 접근 제한사항
		지적 제한사항	지적 접근 제한사항
비용영역		평가수집비용	평가비용/구매비용/이전비용
		보존처리비용	가공비용/보존비용
		보관비용	보관공간/보관방법 관련 비용
		참조비용	물리적·지적 참조비용

이와 같은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 내용은 기관의 정책이나 지침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사진기록의 평가설문지

평가영역	평가요소	설문내용
기능영역	식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이 생산되고 이용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 사진기록의 생산자, 제목, 목적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관련되어 있는 기록 및 정보원을 통해 확인되는가?
	출처·관리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출처 및 관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사진기록의 보관 및 소유권에 대한 이력이 연속적이며 명확한가?
	원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생산자 또는 도큐멘테이션에 관련된 인물이 구성한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가?
	완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 컬렉션이 완전한 상태로 집결되어 있는가?
	기관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이 기관의 구조나 기능과 관련되어 생산된 결과물인가? • 사진기록을 생산 또는 이용했던 조직 및 개인의 기능이 조직 구조 내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가? • 사진기록이 조직 및 개인의 기능을 적절하게 도큐멘테이션하고 있는가?
	생산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가?(사진가/이용자/후원자/기술자/도큐멘테이션수행자 등) • 사진기록의 생산에 관계된 인물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사진가가 유명한 인물인가?
내용영역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주제를 관련 기록 및 정보원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가? • 사진기록의 주제가 기관의 수집정책과 부합하는가?
	부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이 본래 생산 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사진기록의 부가적인 정보가 기관에 유용하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회소성을 가지는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기간의 범위가 주제의 연대기적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포괄하고 있는가?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이 주제를 얼마나 완전하게 도큐멘테이션하고 있는가? • 사진기록의 내용이 의도된 주제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실물영역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이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앞선 세대의 기록인가? • 사진기록이 신뢰할 수 있는 원본성을 갖춘 세대의 기록인가?
	시각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을 구성하고 있는 색, 노출, 초점, 톤과 같은 시각적 요소의 질이 우수한가? • 사진기록의 시각적 어휘가 생산자의 의도에 맞게 표현되어 있는가?
	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미적인 가치가 우수한가? • 사진기록이 사진사나 문화사의 측면에서 회소성을 가지고 있는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재료나 프로세스가 회소성을 가지는가? • 사진기록의 물리적인 크기나 형태가 회소성을 가지는가?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연대가 오래되었는가? • 사진기록의 연대가 해당 지역이나 시기의 역사에 있어 중요하거나 회소성을 보이는 시대에 해당되는가?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의 물리적 및 화학적인 보존 상태나 손상정도가 어떠한가?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기록이 중요한 개인, 장소, 사건과 특별한 연관성을 가져서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평가영역		평가요소	설문내용
이용영역	이용성	기관내 이용성	• 사진기록의 기관내에서 법적 및 행정적인 이용성이 있는가?
		기관의 이용성	• 사진기록의 외부이용자에 의해 현재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 • 사진기록이 잠재적인 이용성을 가지는가?
	이용제한	물리적 제한사항	• 사진기록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때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가?
		지적 제한사항	• 사진기록에 지적으로 접근할 때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가?
비용영역	평가수집비용	평가수집비용	• 사진기록을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전문적인 비용이 소요되는가? • 사진기록을 구매 및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과 부합하는가?
		보존처리비용	• 사진기록을 가공 및 보존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과 부합하는가?
	보관비용	보관비용	• 사진기록을 보관할 공간 및 시설이 충분한가? • 사진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 기간의 예산과 부합하는가?
		참조비용	• 사진기록을 물리적으로 참조할 때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가? • 사진기록을 지적으로 참조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가?

4. 결론

19세기 발명 이래 사진은 대표적인 이미지 기록 수단으로서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다양한 목적에 의해 생산되고 축적된 사진기록은 귀중한 시각적 자원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사진기록을 수집하거나 이미 소장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사진기록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는 기록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으로,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카이브즈에서 사진기록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진기록의 개념과 가치를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진기록은 사진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사진이미지 중에서 지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으로, 다

양한 세대의 사진기록은 제각기 다른 매체적인 특성과 정보를 지닌 기록으로서 아카이빙의 대상이 된다. 사진기록은 생산자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원래 생산목적과는 별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원형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 및 연계성으로 인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기록의 증거가치, 정보가치, 실물가치는 각각 사진기록을 구성하는 맥락, 내용,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사진기록의 평가에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진기록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배경, 정보의 전달방식, 물리적인 형태와 같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진기록의 평가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개별적인 기록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사진기록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이를 위해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으로는 Long, Leary, Charbonneau,

Vogt-O'Connor의 연구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으로서 총 5개의 평가영역과 25개의 평가요소를 제안했다.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은 기능영역, 내용영역, 예술영역, 이용영역, 비용영역으로 구분하여 설계했다. 기능영역은 사진기록의 생산배경 및 기능적 맥락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식별성, 출처 및 관리이력, 원질서, 완전성, 기관관계성, 생산관계자라는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했다. 내용영역은 사진기록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 및 완전성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주제, 부가정보, 기간, 완성도라는 네 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했다. 예술영역은 사진기록의 물리적 원본성, 예술성 및 연계성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세대, 시각문법, 예술성, 형태, 연대, 상태, 연계성이라는 일곱 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했다. 이용영역은 사진기록의 이용도와 접근성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기관내 이용성, 기관 외 이용성, 물리적 제한사항, 지적 제한사항이라는 네 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비용영

역은 사진기록을 평가, 수집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영역으로 평가수집비용, 보존처리비용, 보관비용, 참조비용이라는 네 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요소를 사진기록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문내용을 요소별로 간략하게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평가기준은 사진기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 내용, 형태, 이용 및 비용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기준은 이론적인 분석에 근거한 기준이므로, 평가 실무를 통해 실제적인 유용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차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진기록의 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평가기준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무·김상민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얼 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 국가기록원. 2007. 『2007 국가기록백서』.
- 국가기록원. 2007. 『NAK-P-2007-14 시청각 기록물 관리 실무매뉴얼』.
- 박주석 외. 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재원.
- 박치홍 외. 2008. 사진기록물의 정리 및 기술에 대한 연구 - 최민식 컬렉션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57-274.
- 유경선 외. 1995. 『사진용어사전』. 미진사.
- 이교준 외. 2006. 『국가기록원 용역보고서 - 간행물 및 시청각물 관리체계혁신』. (주) 듀플렉스.
- 이승억. 2006. 기록의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

- 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37-80.
- 임양환. 2005. 컬렉션사진의 보존과 관리. 『기록관리학보』, 10: 33-62.
- 주영주. 1989. 국가기록물로서의 시청각자료. 『기록보존』, 3: 41-86.
- 주영주. 1996. 국가 시청각기록물 관리. 『기록보존』, 9: 7-20.
- 최인진. 1999. 『한국사진사』. 눈빛.
- 최정태 외. 2005. 『기록관리학사전』. 한울아카데미.
- 한국기록학회연합.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 현종철 외. 2005. 『민주화운동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현종철. 2005.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역사정리.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Bailey, C. 1997. "From the Top Down: The Practice of Macro-Appraisal." *Archivaria*, 43: 89-128.
- Boles, F. & J. M. Young, 1985. "Exploring the Black Box: The Appraisal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Records." *The American Archivist*, 48(2): 121-140.
- Boles, F. 1991. *Archival Appraisal*. Neal-Schuman Publishers, Inc.
- Boles, F. 2005.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Charbonneau, N. 2005. "The Selection of Photographs." *Archivaria*, 59: 119-138.
- Cook, T. 1981. "Media Myopia." *Archivaria*, 12: 146-157.
- Cox, R. J. 1994.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11-36.
- Cox, R. J. 2002. "The End of Collecting: Towards a New Purpose for Archival Appraisal." *Archival Science*, 2: 287-309.
- Eaton, G. T. et al. 1985. *Conservation of Photographs*. Eastman Kodak Company.
- Ehrenberg, R. E. 1984. "Aural and Graphic Archives and Manuscripts." *A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 Gibson, G. et al. 2001. *Glossary of Terms Related to the Archiving of Audiovisual Materials*. UNESCO.
- Ham, F. G. 1993.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7. : 강경무 · 김상민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 Kula, S. 1983. *The Archival Appraisal of Moving Image: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UNESCO.
- Langford, M. et. al. 2007. *Langford's Basic Photography*. 8th Ed. Focal Press.
- Leary, W. H. 1985. *The Archival Appraisal of Photographs: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UNESCO.

- NARS. 1984. "Intrinsic Value in Archival Materials." A Modern Archives Readers: Basic Reading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 O'Toole, J. M. 1990. *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이승억 역. 『기록의 이해』. 진리탐구. 2004.
- Pearce-Moses, R.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Reilly, J. M. 1986. *Care and Identification of 19th-Century Photographic Prints*. Eastman Kodak Company.
- Ritzenthaler, M. L. et al. 1984. *Archives & Manuscripts: Administration of Photographic Collections(SAA Basic Manual Seri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Ritzenthaler, M. L. et al. 2006. *Photographs: Archival Care and Management*.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chellenberg, T. R. 1956. "The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National Archives Bulletin*, 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 Schellenberg, T. R. 1965. *The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wartz, J. M. 1995. "We make our tools and our tools make us: Lessons from Photographs for the Practice, Politics, and Poetics of Diplomats." *Archivaria*, 40: 40-74.
- Schwartz, J. M. 2002. "Coming to Terms with Photographs: Descriptive Standards, Linguistic "Othering," and the Margins of Archivy." *Archivaria*, 54: 142-171.
- Schwartz, J. M. 2004. "Negotiating the Visual Turn: New Perspectives on Image and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67(1): 107-122.
- Wilson, L. 2000. "Secure the Shadow: The Appraisal of Photographs." *AABC Newsletter*, 10(3). [cited 2008.12]. <http://aabc.bc.ca/aabc/newsletter/10_3/secure_the_shadow.htm>.